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를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

■ 배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62호)

2025.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배준영 · 서명옥 · 김희정 · 조은희 · 김소희 · 박성민
이성권 · 조지연 · 박수민 · 이달희 · 김민전 · 김기현
김미애 · 강명구 · 강민국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5. 3. 28.

3) 회 부 일 : 2025. 3. 31.

※ 의안번호 : 946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도, 구·시·군, 읍·면·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II.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사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9호).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행정안전위원회	9.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사무에 관한 사항	다. <u>선거관리위원회</u> ----- -----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10. ~ 17. (생략)	10. ~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고(「국회법」 제36조),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1), 국정감사는 「정부조직법」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2)).

현행 국회법 제37제1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상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법」³⁾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에 시·도, 구·시·군, 읍·면·동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국정감사의 실시가 곤란하다는 반론이 제기된 바 있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의 실시를 비롯한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로, 행정안전위원회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채택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위원회별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인
2.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9인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9인
4.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7인

하여 왔으며, 제21대 국회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의 주요내용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의 주요 사례는 아래 표에
서와 같음.

[표-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시정처리요구사항

연도	국정감사 주요내용 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
2023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대한 선관위 직원의 독점적 인사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123)
2021	○ 중앙,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공정성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국정감사결과보고서 p.31) ○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운영에 관한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선관위별 통일적인 법 적용·해석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차단할 것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169)
2020	○ 선관위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매우 적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여성 비율도 일정 수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37) ○ 각급 선관위 위원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40) ○ 경기도 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고 선거권자가 많으므로 경기북부지역에 제2선관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국정감사결과보고서 p.43) ○ 구·시·군 선관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법 질의에 회답하도록 하고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의 개정사항과 선거법 판례, 지역별 질의 예시를 총괄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일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국정감사결과보고서 p.217)

자료: 각 연도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서 발췌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도 실시되고 있는 국정감사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수행의 공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보임⁴⁾.

문 의 처
02)6788-5014

4) 참고로,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2025.4.24.)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위원회는 별도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2025.4.29.)하였음.